##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조승환·서일준·정희용

이성권 · 김태호 · 김성원

김도읍 • 안철수 • 권영세

김 건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 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8조(선원의 직업안정업무) ①	제108조(선원의 직업안정업무) ①		
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			
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			
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			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		
	<u>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</u>		
3. • 4. (생 략)	3.•4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